

'14년 「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」 중국 해외연수 프로그램 [예비]창업팀 모집 공고

중국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유망 (예비)창업팀을 대상으로
「2014년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」 (예비)창업자 모집 계획을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7월 4일
중소기업청장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(예비)창업팀을 발굴하여 현지 연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글로벌 창업 진출 촉진

□ 지원규모 : 10개 팀 내외(팀당 2명 이내)

< 신청분야 및 지원규모 >

국가	신청분야	지원규모	지원기간(현지연수)
중국(상해)	제조 등 전 업종	10개 팀 내외	'14.8.18.~29. (2주)

□ 지원내용

- (현지연수 기간) 2014년 8월 18일(월) ~ 8월 29일(금), 12일 간
- (현지연수) 현지 전문가 특강, 시장 조사, 투자자 등 네트워킹, 현장 방문, BM 모델 수립 교육 등 현지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
- 현지 전문 운영기관을 통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

< 중국 해외연수 프로그램(2주) >

구분	세부내용
전문가특강	▪ 현지 시장분석, 성공전략, 현장방문 등
멘토링	▪ 분야별 전문 멘토링 실시
네트워킹 등	▪ 현지 엔젤투자자 등과 네트워킹, 데모데이 제공
현지 시장 조사	▪ 창업아이템에 대한 현지 시장 조사 지원
현지 체재비 지원	▪ 창업팀 항공료 100%, 숙박비 50% 지급

* (예비)창업팀은 연수기간 숙박비 약 14만원(2주) 부담

2. 신청대상

□ (신청자격) ①예비창업자 또는 ②5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로 신청 가능하며, ③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* 2인 이내 팀으로 신청가능(팀원은 변경 불가)하며, 1인은 반드시 중국어 능통자여야 함

* 단, 중국어 능통자 부재 시, 신청자 본인이 현지에서 통역 등을 활용하여 현지 시장조사 시행(통역비 지원 없음)

① 예비창업자

☞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(개인 및 법인기업)이 되어 있지 않은 자

* 팀으로 신청할 경우, 팀 구성원 전원이 예비창업자이어야 함

② 5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

☞ 2009년 1월 1일 이후 기업을 설립한 자

* 개인사업자(법인전환 포함) : 사업자등록증명 상 '사업개시일(개업일)' 기준
단,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도 양수한 경우,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

*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법인설립등기일' 기준

③ 지원제외대상

☞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- 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(프리워크아웃),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 면책 선고를 받은 경우,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 창업자금을 받은 경우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개인, 기업은 신청가능

☞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
☞ 중소기업청 및 타 중앙정부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, 글로벌 진출사업」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개인, 기업

- * 단, 공고일 현재 수행을 완료(협약종료)한 자는 신청 가능하지만,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을 기 수혜받은 창업자(기업)은 지원 제외

☞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- * 지원기관으로부터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자

☞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(붙임 1 참조)

3. 신청방법 및 절차

□ 신청기간

- (신청기간) 2014년 7월 8일(화) ~ 7월 31일(목), 16:00까지
- (신청방법) 온라인관리시스템(www.changupnet.go.kr)을 통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, 발표평가 자료(중국어로 작성) 제출

□ 신청절차

신청절차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수행내용	회원가입(신규)	온라인 직접입력	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	접수 확인 및 완료

○ 온라인 신청절차

☞ 1단계 : 회원가입

- 창업넷 홈페이지(www.changupnet.go.kr)에 회원가입(신규)

☞ 2단계 :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

- 창업넷 홈페이지(www.changupnet.go.kr) 공고문(공지사항)에 첨부되어 있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(한글파일) 및 발표자료(PPT)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

☞ 3단계 :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

- 참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발표자료 작성 완료 후, 창업넷 창업지원 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작성파일 업로드
- * 창업넷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'창업지원사업 신청하기' 클릭 → 새롭게 열리는 창의 우측상단 '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 신청하기' 버튼 클릭
- * 작성 파일 : (기본) 참가신청서, 사업계획서, 발표자료
(추가) 기타 사업계획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등

☞ 4단계 : 접수 확인 및 완료

- 신청·접수 완료 확인

4. 평가 및 선정

□ (평가방법) 발표평가로 진행(신청자별 20분 내외)

- * 중국어 발표를 원칙으로 하나, 현지 통역사용 예정인 자는 한국어 발표 가능

□ (평가항목)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및 사업성, 제품완성도 평가

< (예비)창업자 평가 항목 >

평가항목	세부내용
기술성	경쟁사의 모방 가능성, 경쟁사의 모방에 대한 대처방안, 기술적 차별성, 제품 성능의 우수성 등
사업성	국내외시장 규모, 현지 시장진입 및 성장 가능성, 매출 가능성, 제품완성도 등

□ (최종선정) 평가 결과 상위 순으로 선정인원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

5. 추진일정



*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6. 유의사항

-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해외 현지 진출전 선정이 취소되며, 현지진출 후 발견 시 선정취소와 더불어 기 지원된 정부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
 - 진출국가 비자 발급이 불가할 경우
 - 신청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
- 해외현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해외진출 참가자에게 있음
 - 해외 현지법규를 준수할 것
 -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연락체계를 유지할 것
 - 질병 등에 대비 현지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
 - 도난, 분실 등에 대해 주의를 다할 것
 - 해외 보육장소가 속한 도시를 벗어날 경우 사전 허가를 득할 것
- 선정된 해외창업팀은 숙박비 50%(14만원)를 창업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, 미납부 시 선정 취소 조치 됨

-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, 발표평가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
- 모든 참가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되었으나, 프로그램 外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건·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후 제공할 본 사업 운영 지침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 -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(예비)창업자에게 있음

7. 문의처

- 사업 관련 문의 : 042-480-4331~4
- 온라인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: 042-480-4373

【붙임 1】

**「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사업_해외현지 진출프로그램」
지원 제외 대상업종**

*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을 지원대상 업종으로 하되, 아래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

업종	품목코드	해당업종
제조업	33402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中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건설업	41~42	건설업(산업플랜트 건설업(41225),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(41224), 조경건설업(41226), 방음 및 내화 공사업(42203), 소방시설 공사업(42204) 제외)
도매 및 소매업	451	자동차 판매업
	452中	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중 소매업
	45302	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
	46102中	주류, 담배 중개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
	47	소매업
운수업	491, 2	철도 운송업, 육상 여객 운송업
	50中	수상운송업 중 여객운송업
	51中	항공운송업 중 여객운송업
	52914	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
	52915	주차장 운영업
숙박 및 음식점업	55~56	숙박 및 음식점업
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	5821中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금융 및 보험업	64~66	금융 및 보험업
부동산업	68	부동산업
임대업	6911	자동차 임대업
	692	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
전문서비스업	711~2	법무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
	7151, 2	회사본부, 비금융 지주회사
수의업	731	수의업
사업지원 서비스업	752	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
	753	경비, 경호 및 탐정업(보안시스템 서비스업(75320) 제외)
	759	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(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(75991 중 콜센터 서비스업), 전시 및 행사대행업(75992), 포장 및 충전업(75994) 제외)

업종	품목코드	해당업종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84	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
교육서비스업	85	교육서비스업(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(8565), 온라인 교육학원(85504) 중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은 제외)
보건업	86	보건업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902	도서관,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
	91	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(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(9113),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(9119) 제외)
협회 및 단체	94	협회 및 단체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	기타개인 서비스업(산업용세탁업(96911) 제외)
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	97~98	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
국제 및 외국기관	99	국제 및 외국기관